

# 어린이통학버스 안전 확인 장치 설치 안내

〈'18.10.16.(화) 기획조정관(학교안전팀)〉

## □ 추진 목적

- 어린이통학버스 아동 방치\*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장치 구축, 학부모가 안심할 수 있는 통학환경 조성

\* '18.7.17. 경기도 동두천시 어린이집 통학버스 내 4세 아동 방치 사망사고

## □ 추진 근거

- 2018년 제6차 국가시책사업 안내(교육부 학교안전총괄과-4997,'18.9.7.)
- 어린이통학버스 안전확인 장치 설치 관련 안내(교육부 학교안전총괄과-5337,'18.10.8.)
- 국토교통부 「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」 개정안 입법예고 ('18.10.10.)
- 경찰청 「도로교통법」 개정안(제53조 등 신설) 공포('18.10.16.예정)

## □ 설치 추진 계획

- (사업대상) 유치원, 초등·특수학교, 직속기관 어린이통학버스 833대\*

\* 2017년 어린이통학버스 운영현황 조사 결과(기획조정관-6676,2018.7.25.)

※ 학원의 경우, 기관 여건에 따라 자율 설치 또는 설치 차량과 계약 권장

- (사업기간) '18.10월 ~ 12월

- (사업내용) 어린이통학버스 안전 확인 장치 설치예산 지원

- 교부금액: 1대당 30만원(단, 직속기관은 40만원)

- 의무설치: 어린이 하차 확인 장치(일명, 잠자는 아이 확인 장치)\*

· 이하 국토교통부령에 의한 장치로,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성능 인정서를 발부받은 장치(업체 신청→공단 승인)에 한함

❖ 「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(국토부령)」  
개정안 제53조의4(하차확인장치)

- ① 어린이운송용 승합자동차에는 원동기를 정지시키거나 시동장치의 열쇠를 제거한(이하 '운행종료') 후 3분 이내에 차실 가장 뒷열에 있는 좌석부근에 설치된 확인버튼(근거리 무선통신 접촉을 포함한다)을 누르지 않는 경우,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경고음과 제48조제4항에 따른 표시등 또는 제45조에 따른 비상점멸표시등이 작동하는 하차 확인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.
- ② 제1항에 따른 경고음 발생장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.
  - 1. 경고음은 발생과 정지가 반복되도록 하고 같은 음색의 소리를 일정한 간격으로 발생시킬 것
  - 2. 경고음의 크기는 자동차 전방 또는 후방 끝으로부터 2미터 떨어진 위치에서 측정하였을 때 60데시벨(A) 이상일 것

- 선택설치: 상기 장치 외, 아동 사고 예방을 위한 기타 안전장치 (안전벨, 동작감지센서, 위치알림 등) 추가설치 권장

## □ 기타 협조사항

- (행정사항) 사업기간 내 상기 안전 확인 장치 구매·설치 추진
  - 결과보고: '19.1월 중 설치결과 및 정산내역 보고(별도안내 예정)
  - 목적사업비는 전액 집행하여, 잔액이 남지 않도록 유의
  - 향후 어린이통학버스 임차계약 시, 특수조건에 '국토교통부령에 의거한 안전장치를 설치한 차량' 추가(미설치 차량 임차계약 불가)
- (안전교육) 붙임 「2018년 어린이통학버스 안전 강화 대책」 참고, '어린이통학버스 안전 운영 준수사항'에 따른 안전교육 실시
  - 안전 확인 장치 설치 후, 운전자·동승자 및 학생들이 사용방법을 숙지하도록 교육 실시